

글로벌인문기술연구소 규정

시행: 2022. 12. 01.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글로벌인문기술연구소(Global Center for Technology in Humanities,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인문학의 관점에서 기술의 문제를 글로벌 융합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다각도로 연구함으로써 국내·외 학문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문학과 기술의 융합을 도모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한다.
2. 인문 기술 연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3. 해외 동향과 국내 연구의 상황을 종합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한다.
4.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연구역량의 강화를 꾀한다.
5. 인문기술과 관련한 연구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축적한다.
6. 학술활동 결과물의 대중적 확산에 노력한다.

제4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5조(조직)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 1인과 분야별로 부장을 두며,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소관위원회의 심의와 소속 대학(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연구원의 자격) 본 연구소 연구원의 자격 등은 「부설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조직 및 운영)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소장은 연구원들의 추천을 받은 소수의 연구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본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본 연구소의 조직, 운영체계 및 사업계획 수립
3. 본 연구소의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과제 선정
4. 본 연구소의 주요 사업 운영 및 진행에 대한 평가,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및 감사

제9조(재원) 본 연구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한국연구재단 등 국공립 기관의 용역 사업비
2. 본교의 연구소 지원비
3. 보조금 및 기부금
4. 기금 및 기타 수익금

제10조(회계) ①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로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